

도시계획국

◇ 도 시 계 획 과

◇ 주 택 과

◇ 건 축 녹 지 과

◇ 공 원 녹 지 과

◇ 지역개발추진단

도시계획국 조치결과(계획) 총괄

□ 지적사항별

(단위:건)

부 서 별	지 적 사 항					수범사례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문책요구	
계	17	2	12	3		3
도시계획과	4	1	2	1		
주 택 과	3		3			1
건축녹지과	2		2			1
공원녹지과	4	1	2	1		1
지역개발추진단	4		3	1		

※ 수범사례 3건 미포함

□ 조치상황별

(단위:건)

부 서 별	조 치 결 과 (계획)				
	계	완 료	조치중	시기미도래	불 가
계	17	9	3	4	1
도시계획과	4	2	2		
주 택 과	3	3			
건축녹지과	2		1	1	
공원녹지과	4	4			
지역개발추진단	4			3	1

【 도시계획과 】

목 록

□ 도로개설공사 철저

□ 평내서측도로우회도로 입체교차로 개설

□ 신설학교 진입도로 개설 지원

□ 장현도시계획도로(중1-4)사거리 체제 개선

일련번호	NO 38

도로개설공사 추진철저

□ 지적사항

○ 도시계획도로(진건 소2-18호 등)개설공사 시 인도를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사고위험이 대두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향후 개설되는 모든 도시계획도로는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 조치의견 : 시정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도시관리계획상 8m 이상의 도로는 반드시 인도(최소 1.5m 이상)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반영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최초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1977년경에는 보행인 통행안전에 대한 관심이 적어 6m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함으로써 인도설치폭원 미달로 인도가 미설치된 부분이 있었음

□ 향후계획

○ 8m 이상의 도로는 반드시 인도를 설치하고 도시계획도로 지정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8m 이하 도로결정 지양

일련번호	NO 39

평내서측우회도로 입체교차로 개설

□ 지적사항

○ 평내택지서측우회도로 추진 시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을 감안할 때 반드시 입체교차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와 협의가 요구됨.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2006. 3. 31. : 평내택지에서 서울방향 입체화시설 설치예정 알림
[한국토지공사 ⇒ 시]

○ 2006. 4. 11. : 실시계획인가 고시(입체화시설 설치 계획 반영)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입체화시설을 포함한 관리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 2007년 12월말 준공

일련번호	NO 40

신설학교 진입도로 개설 지원

□ 지적사항

○ 교육청에서 초·중·고교 건설시 진입도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을 신설되는 학교의 총체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해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 : 조치중

○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설립은 교육청의 고유업무로서 학교설립에 따른 진입로의 개설은 부대시설공사로서 교육청에서 사업시행 하여야 할 사항임.

□ 문제점 및 대책

○ 학교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토지매입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지정을 요구(교육청→시)하여 지정되면 학교진입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소요재원확보 문제로 요구사항 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설립사업비(국비 등)로 진입도로 설치 유도

□ 향후계획

○ 수시로 각지에 건설되는 학교시설 진입도로를 시재원을 투자하여 개설하기에는 재정여건상 문제가 있으므로

○ 도로시설결정시 입안자(교육청)로 하여금 도로개설계획서를 수립 제출하도록 하여 당위성 인정시 도로계획선 지정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부분적 지원을 검토하고,

○ 기타지역에 대하여는 학교시설사업비(국비 등)에서 사업추진하도록 교육청과 협의

일련번호	NO 41

장현도시계획도로(중1-4) 사거리 체제 개선

□ 지적사항

○ 장현도시계획도로가(구국도~신국도) 구국도를 중심으로 신국도 방향만 개설함으로서 수목원방향 8~10m도로와 개설도로(20m)와의 폭원 상이로 사거리체계에 문제가 있어 해결방안 강구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조치중

○ 사거리 부분의 양측 도로폭원 상이로 인한 문제로서 산림인력개발원 방향의 도로폭원을 부분확장(가각정비 등)함으로써 정규사거리 체계 유지

□ 문제점 및 대책

○ 산림인력개발원 방향으로 도로폭원을 확장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소요재원 확보상 문제로 중기적 측면에서 사업추진

※ 도시계획시설사업비 소요예산액(현재) : 14건 약 560억원(미확보액)

□ 향후계획

○ 산림인력개발원방향 진입부분에 대한 가각정비 등의 사업계획을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 후 추진

【 주 택 과 】

목 록

□ 아파트 건립공사 착공전 가감속 차선 설치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철저

□ 공동주택 단지 내 문화·예술공간 확보

일련번호	NO 42

아파트 건립공사 착공전 가·감속차선 설치

□ 지적사항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아파트 건립공사 착공 이전에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감속차선 설치를 지적하였으나 개선 실적이 미흡한 바, 향후에는 공사착공전 필히 가·감속차선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주변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주변 간선도로 교통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가·감속차선이나 공사용 가설도로를 조기에 확보하여 착공 시 선공사토록 유도하겠음.

□ 문제점 및 대책

○ 공사차량 운행 시 주변 주민 및 토지주 동의 등 현장 여건에 따른 가설도로 조기 미확보 및 가·감속 차선 미확보로 인하여 주변주민들 불편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바, 최대한 주민불편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차량 운행 시 시공사로 하여금 항시 안전요원 배치, 먼지억제를 위한 살수차량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음.

□ 향후계획

○ 사업승인 검토 및 공사착수전 사업시행사로 하여금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용 가설도로 확보 및 가·감속 차선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 착수토록 행정지도 할 계획임.

일련번호	NO 43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철저

□ 지적사항

○ 공동주택 관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이 전무한 것은 소극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결과임.

○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으로 인한 이행강제금과 같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원칙을 준수하여 단속에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5건 부과

□ 문제점 및 대책

○ 우리 시 공동주택은 230여 단지 약 89,000세대로서 특히, 2002년 7월 이후 급격히 사용검사된 공동주택(아파트)이 50여 단지이고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나, 업무환경 열악으로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원상복구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사전예방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임.

□ 향후계획

○ 건축행위가 경제적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근원적인 규제는 위반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당이윤을 환수하는 방법인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속업무에 효율 및 철저를 기하고자 함.

일련번호	NO 44

공동주택 단지 내 문화·예술공간 확보

□ 지적사항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건축위원회 및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 시 매번 공동주택 단지 내에 야외공연장등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토록 하였는데 그 실적이 미비함. 준공 시 철저한 확인 등으로 향후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아파트 단지내 야외공연장 등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 확보 사항이 지방건축위원회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반영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철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지방건축위원회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과정에서 문화·예술공간 확보가 미반영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주체에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

□ 향후계획

○ 지방건축위원회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들의 주거공간의 질적향상 및 편의를 위해 단지 내에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토록 행정지도하여 사업계획승인 시 검토토록 할 계획임.

【 건축녹지과 】

목 록

□ 용정빌라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

□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일련번호	NO 45

용정빌라 도시계획도로 조속개설

□ 지적사항

진건 용정빌라 진·출입로 폐쇄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하여 1991년 당시 행정기관의 착오로 야기된 민원임을 감안, 행정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민원해결을 위해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시기미도래

○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상황과 도로의 필요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개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재원의 확보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개설 검토 추진할 계획임.

□ 문제점 및 대책

○ 과거 건축허가 시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해 허가·사용승인된 사항이 최근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이런 과거 허가상의 흠결을 이유로 사유 토지를 시가 매입해 도로로 개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다만, 지역주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재원의 확보 범위 내에서 다른 도시계획도로보다 우선적으로 개설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향후 재원의 확보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일련번호	NO 46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 지적사항

건축법 위반 과태료,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등 세외수입체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여 누적되고 있는 실정인 바, 채권확보, 납부독려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조치중

○ 「건축법」 제69조제4항에 의거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식을 기재하여 소유권변동 및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여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유도

○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속적인 재산조회로 소유재산 파악 및 재산압류을 실시하고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독촉고지서 발부

□ 문제점 및 대책

○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납부 부담가중

○ 체납자 다수가 이미 법원에 형사적 처벌에 대한 벌금납부 상태이나, 행정적 처벌인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처분 함으로써 사법적, 행정적 처벌로 이중 고충을 받고 있어 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준비 중인 상태임.

○ 장기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 등 처분 시 지역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됨.

□ 향후계획

○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채권확보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공원녹지과 】

목 록

□ 지방도 390호선 가로수 관리 철저

□ 오남저수지 일원 관광자원화 활용방안 강구

□ 시 상징물을 통한 홍보방안 강구

□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

일련번호	NO 47

지방도 390호선 가로수 관리 철저

□ 지적사항

○ 지방도 390호선 금곡동~진관 인터체인지 구간 도로변에 메타세쿼이아 고사목에 대하여는 이식토록 하고, 금곡동 구간의 가로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위해 왕벚나무를 식재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시정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지방도 390호선 금곡동~농업기술센터 앞 구간의 메타세쿼이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진관 인터체인지 구간으로 이식 및 보식을 완료 하였으며

○ 금곡동~농업기술센터 앞 구간에 대하여는 2007년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금곡동 구간의 가로수와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음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일련번호	NO 48

오남저수지 일원 관광자원화 활용방안 강구

□ 지적사항

○ 오남저수지 일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개정, 상급기관 건의 등을 통하여 산책코스 등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산림법령 개정시나 산림청 등 상부기관에서 보안림 관련 의견수렴 시 오남저수지 일원에 주민을 위한 산책로 개설이 가능토록 건의토록 하겠으며

○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유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오남저수지 주변에 산책코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음

□ 문제점 및 대책

○ 오남저수지는 만수위로부터 좌·우측 상단 1km까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으로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추진이 어려움

□ 향후계획

○ 산림법령 개정 시나 상부기관에서 의견수렴 시 보안림 구역 내에서도 주민을 위한 산책로 개설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

일련번호	NO 49

시 상징물을 통한 홍보방안 강구

□ 지적사항

○ 우리 시의 상징물인 소나무와 개나리를 찾아보기 힘든데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라도 청사 내에 소나무와 개나리를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시도 107호선 확·포장구간에 시 상징물인 소나무를 활용하여 시범거리를 조성코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우리시를 알리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코자 함

□ 문제점 및 대책

○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 확산으로 조경용 소나무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계획

일련번호	NO 50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

□ 지적사항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한 검증과 예측으로 보조금에 대한 반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완료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이용하여 추가사업 발주 등 시민건의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 국도비 보조사업 요청 시 철저한 사전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여 교부된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조사 및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여 국도비 집행 잔액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음

【 지역개발추진단 】

목 록

□ 남양주 유통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 진건산업단지(레미콘 공장)관리 철저

□ 조안면 공공시설 집중화 조속 추진

□ 부적정 완충녹지 조속 해제

일련번호	NO 51

남양주 유통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 지적사항

○ 사업기간이 7년이 지난 현재에도 가시화된 실적이 없음. 치밀한 사전계획과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조속히 유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시기미도래

○ 현재 유통단지 사업대상지인 진건읍 진관리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 법상 유통단지의 입지가 불가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지역현안사업으로 반영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추진하고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 광역도시계획이 확정 후 조속히 사업 추진하고자 한국토지공사와 남양주 유통단지 조성에 관한 기본합의를 추진하고 있음.

□ 문제점 및 대책

○ 상위계획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결정 이후 사업추진 가능하며,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지자체별로 안건을 심의하고 있어 올해 안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결정과 동시에 사업추진 하여 조속히 유통단지 지정신청 하고자 함

일련번호	NO 52

진건산업단지(레미콘공장) 관리 철저

□ 지적사항

○ 건교부의 별내지구 내 레미콘 공장의 진건읍 진관리 일원 이전계획이 있으나 레미콘공장의 입지 조건으로도 부적합할 뿐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시기미도래

○ 별내 택지개발로 인하여 이전되는 공장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성코자 하는 진관산업단지는 현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상 입지불가하며, 건교부에서 동 지침을 개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개정 여부 및 개정 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임.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건교부에서 동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추후 지침 개정 여부에 따라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일련번호	NO 53

조안면 공공시설 집중화 조속 추진

□ 지적사항

○ 조안면 공공시설 집중화 사업 추진과 관련 의회에 답변한 내용과는 달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 당초 계획대로 2006년 12월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조치의견 : 처리요구

□ 조치결과(계획) : 시기미도래

○ 조안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확정되면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음.

□ 문제점 및 대책

○ 조안면 공공시설 집중화는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건립 계획 수립이 선행 추진되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건립계획에 따라 추진할 사항임.

○ 향후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2006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어려운 사항임.

○ 조안면 공공시설 집중화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조안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계획 수립이 확정된 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음.

일련번호	NO 54

부정적 완충녹지 조속 해제

□ 지적사항

○ 46번 경춘국도변 완충녹지 및 조안면 우선해제지역 마을 중앙에 지정되어 있는 완충녹지는 당초 목적에 부합치 않고 부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이니 조속히 해제절차를 이행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바람

□ 조치의견 : 건의요구

□ 조치결과(계획) : 불가

○ 국도 46호선변의 완충녹지는 국도의 매연·소음·진동·비점오염과 악취 등의 제반 공해를 차단 및 완화하여 주거지역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것으로서 당초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한 사항으로서 완충녹지의 해제는 어려운 사항이나,

○ 완충녹지 지정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2015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완충녹지 내 이면도로를 계획하는 등 주민이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조안면 송촌리 우선해제 대상인 두촌1취락은 4차에 걸친 주민 공람, 지방의회의 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2005년 8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 후 2007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득한 취락으로서 두촌1취락 내 계획된 녹지는 송촌초등학교 외곽지역에 계획된 녹지로 입안당시 완충녹지로 계획하였으나 해제 후 지역적 환경 보호 및 양호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시 경관녹지로 조정토록 조건부 심의된 사항으로 녹지계획 해제는 불가한 사항이며, 참고로 녹지·공원 등의 녹지율을 추가 확보하도록 조건부 심의되었습니다.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2015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계획 >

○ 2007. 01.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주민공람·공고

○ 2007. 03. 의회 의견 청취

○ 2007. 06.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 2008. 03.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8. 12.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